

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석(金勇錫)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4년 9월 16일

발 의 자 : 김용석(서초), 우미경, 이해경,
최호정, 김제리, 김문수,
이석주, 김현기, 오경환,
이종필, 진두생, 박성숙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장의 도시공원, 학교정화구역 및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청계천 연변 보행길 및 한강시민공원 중 보행 산책로 등은 도시공원 기능을 하고 있으나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이 아니라 「하천법」의 적용을 받고 있어,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.
- 청계천 연변 보행길 및 한강시민공원 보행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,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2. 주요골자

시장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1항제2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국민건강증진법」, 「하천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2호~제6호를 제3호~제7호로 한다.

2. 하천(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) 연변의 보행자길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서울특별시 시장(“이하 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2.- 6.</u> (생략) ②~④	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<u>2. 하천(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) 연변의 보행자길</u> <u>3.- 7.</u> (현행과 같음) ②~④ (현행과 같음)